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 검토보고서

2022. 11. 29.(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동원)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11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5.
- 라. 회부일자 : 2022. 11. 18.

## 3.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식사 및 영양 취약계층인 만75세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급식장소(안 제3조 ~ 제4조)
- 다. 운영 및 운영자 모집(안 제5조 ~ 제6조)
- 라.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제8조)

## 5. 주요 토의 과제

없음

## 6.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건강증진)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10. 6. ~ 10. 26.

- 입법예고 기간 중 각 상임위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한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제시

#### ☞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 주요의견

- (1) 6조 2항의 우선 선정대상에 종교단체가 명시가 안되어있으므로 분명하게 보이도록 추가명시하여 주길 바람
- (2) 6조 4항의 내용은 제3조제2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제3조3항으로 표기된 바 수정필요
- (3) 기존 경로식당 사업의 대상자와 같이 노인의 연령을 만60세이상으로 동일시
- (4) 아직 만나이 도입이 안되어있으므로 모든 나이 앞에 ‘만’ 표시 필요

#### ☞ 마포구 의견

- 「사업 및 조례 사전설명회」 시 나온 의견을 법무팀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 (1) 기존 조문상의 비영리 단체나 법인 안에 종교단체도 포함되나, 분명하게 보이도록 추가 명시하는 것도 필요
  - (2) 기존 경로식당의 대상자와 같이 노인의 연령 정의를 만60세이

상으로 동일시하고 그에 따라 제3조1항3호의 표현도 수정필요  
 (3) 아직 만나이 도입 및 통일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모든 나이 앞  
 에 ‘만’표시가 필요

(4) 제6조 4항의 내용 및 제2조 3호는 오타로 수정필요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수정의결(2022.11.2.)

원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u>65세</u>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li> <li>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급식장소”란 노인 등에게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b>만60세</b>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li> <li>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li> </ol>
<p>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li> <li>3. 그 밖에 <u>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u></li> </ol>	<p>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li> <li>3. <b>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b></li> </ol>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p>

<p><u>상의 사람</u></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u>종교단체</u>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 7. 검토의견

### 가. 제안경위

- 본 제정조례안은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112호로 제출되어, 2022. 11.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제정 배경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마포구 어르신 결식 및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나. 주요 검토의견

####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전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결식 및 영양결핍 우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우리구 어르신들의 돌봄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

## (2) 조례 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급식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운영 및 운영자 모집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
  -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무료급식 지원계획시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제공받는 노인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은 적정합니다.

### 마포구 노인기본 현황(2022.9.31. 기준)

(단위 : 명)

전 체 인구수	노인인구수(65세이상)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7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362,104	54,599	22,948	31,651	24,243	13,168	3,657	9,476	4,549

-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안 제3조 지원대상과 안 제5조 운영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첫 해인 2023.1월부터 12월까지 무료급식센터를 운영하면 급식비, 인건비, 운영 비 등이 구비 7억 6656만 6천원이 소요되고, 총비용이 2023.1월부터 2027.12월까지 209억 3476만원이 것으로 추계되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 되기에 외부 후원 및 모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6조의 운영자 모집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마포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 제7조의 지도점검의 경우 무료급식의 규모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재료 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종합 의견

-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근거한 바, 전체적으로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시행 초기에 선택적 지원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노인 급식 지원사업의 민원이 발생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평균 약 40 억원 총 209억원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기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등의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기타자료(비용추계서, 조례안)

### 가. 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지원대상), 제5조(운영)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3. 1. ~ 2027. 12.(60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시비보조금	-	-	-	-	-	-
	구비보조금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소계(b)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총비용(b-a)	766,560	2,578,600	4,220,900	5,863,200	7,505,500	20,934,760

- 비용 :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 (1일 식단단가 4,000원, 주6일)

#####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구 복지재단을 통해 후원금(1인1구좌 펀드) 모금 지속

- 후원금 목표액 : 총사업비의 30% 목표

▶ 시·구공동협력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및 시사업으로 전환 추진

#####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형신
연락처	02-3153-8854

## 나.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중 만75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